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10. 19 선고 2021나516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10. 19 선고 2021나51632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합1371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A 주식회사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양권석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담당변호사 이형재

변론종결 2022. 8. 24.

판결선고 2022. 10. 19.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19가합1371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E(이하 'E'라 하고, D과 포괄하여 지칭할 때는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한 2017. 7. 25.자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한 위 각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원고들에게 187,670,3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들의 개요

- 1) 소외 회사들은 모두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2) D의 대표이사는 I, 사내이사는 O, 감사는 P이고, E의 대표이사는 I, 사내이사는 O 및 P의 딸 Q, 감사는 P이다.
- 3) 소외 회사들은 공통적으로 I, O, Q 3인이 주주이다.

나.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외 회사들에 대한 채권

-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4. 8. 11. D로부터, E가 발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R 지상 'S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도배, 마루)를 공사대금 132,000,000원에, 주식회사 T가 발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U 지상 'S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도배, 마루)를 공사대금 88,000,000원에 각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회사는 D를 상대로 위 각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120,000,000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0. 24.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12. 29.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7차2955).

3) 한편 원고 회사는 D로부터 D의 E에 대한 위 각 공사에 관한 12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여 E를 상대로 위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8. 6. 20.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2018. 7. 11.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8차1640).

다. 원고 B의 소외 회사들에 대한 채권

1) 소외 회사들은 2015년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V 일대에서 총 9개동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2016. 1.경 신탁회사인 F를 수탁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7. 21.경 위 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소외 회사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 B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D로부터 내부목공사 등을 하도급받았고, D를 상대로 828,500,000원의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1. 25.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12. 15.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6차3244).

3) 원고 B은 E를 상대로 위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 중 255,11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4. 25.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6. 12.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8차1050).

4) 그 밖에도, 원고 B은 E를 상대로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내부 목공공사 대금 75,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0. 26.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7. 12. 29. 확정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7차2968).

라. 소외 회사들의 F에 대한 유보금 지급

소외 회사들은 2016. 7.경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정산 및 종료하면서 F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우발채무의 지급을 위한 유보금으로 합계 435,153,680원을 지급하였고, 유보금의 유보기간은 유보한 항목이 전액 지급완료될 때까지로 정하였다.

마. 소외 회사들의 채권양도

소외 회사들은 2017. 7. 25. 피고에게 F에 대한 위 유보금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하고, 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F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이는 2017. 8. 7.경 송달되었다.

바. 원고 B의 추심명령 등

원고 B은 2017. 1. 10. 위 청주지방법원 2016차3244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D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7타채104), 위 추심명령은 2017. 1. 13. F에 송달되었다. 그런데 원고 B은 2017. 11. 17. 위 추심명령에 기한 압류를 해제하고 추심을 포기하였다.

사. 피고의 채권 일부 추심

피고는 2018. 1. 23. F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187,670,391원을 일부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8, 10, 11, 12, 13, 14,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당심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원고 회사는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합계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원고 B은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합계 1,158,6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각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18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들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피고와 무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소외 회사들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소외 회사들은 모두 폐업한 상태였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8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합계 2~3억 원 가량의 세금도 체납하고 있었다. 또한 D은 합계 20억 원 가량, E는 합계 8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소외 회사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한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실적 저조로 인하여 위 공사대금 채무들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분양되지 않고 소유하고 있던 도시형생활주택들의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의 근저당권,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공동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즉, 소외 회사들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나) 소외 회사들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경영자인 I, P, O는 2017. 6. 28. 피고의 아내인 W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전하여야 할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청주지방법원 2017고합133), 위 I 등은 피고 측의 고소 취하를 기대하고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 즉,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직접 변제하는 것도 아니었고, 소외 회사의 갹생을 도모하는 등 소외 회사의 변제자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행위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의 항변

1) 피고는, 소외 회사들로부터 채무 관리를 위임받은 G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아 대신 추심하여 주면 그 돈으로 소외 회사들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한 피담보채무들을 변제한 후 해당 부동산들을 처분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아 일부 금액을 추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원고 B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이 사건 채권을 추심하여 분배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채권압류의 해제를 받았다’는 사기의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2022. 1. 20. 피고와 G이 실제로 위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공모하여 원고 B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취지의 무죄판결(청주지방법원 2018고단3125)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된다(위 판결은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채권양도 무렵 피고는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G에게 자신의 채권 회수도 도와주면 그 20% 상당액을 사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점, ②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당시 소외 회사들의 변제자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은 명백한 점, ③ 설령 G과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더라도 이는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변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를 비롯한 일부 채권자들의 채권만을 우선 변제하려는 것인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일부 추심하고서도 이를 G에게 교부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였던 점(피고는 G의 채권자로부터 위 추심금을 교부받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G을 믿을 수 없어 추심금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달리 피고가 소외 회사들에게 직접 위 추심금을 전달하려 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원고 B의 채권액 원금만으로도 이 사건 채권액을 초과하는 이상, 원고 B은 물론 원고 회사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전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면 이를 그 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그

양도된 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1186, 2011다71193(병합) 판결 등 참조].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141조에 의하여 병합되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판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0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이상,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인 F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또한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채권 중 187,670,391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들의 각 채권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위 187,670,3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즉,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계 187,670,391원 및 이에 대한 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원고들 중 1명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원고들에게 나누어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원익선, 판사 김지건, 판사 장지웅

별지